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. 12. 9 선고 2015가단13 판결 [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15. 11. 25.

판결 선고2015. 12. 9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, 2014. 12. 13.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,5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, 토지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청구

### 2. 적용법조

#### 가. 피고 B, C

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판결)

#### 나. 피고 D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서효진

별지